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통합본

2022.4.6.(수)

1. 당현당규	1
2. 대북정책	18
3. 공직선거법	30
4.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61
5. 외교안보정책	79
6. 안전과 사회	90
7. 지방자치	107
8. 청년정책	118

\* 본 자료의 저작권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함

## 1.

### 당헌·당규

# 1

## 정강·정책

### 1 정강·정책이란?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상의 중요한 방침.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다.

####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구성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의 믿음	기본정책 - 10대 약속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 ①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산업화-민주화 역사 인식 계승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 ③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 실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간다.”

## ④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돋는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 ⑤ 소외계층을 위한 책임 강화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 ⑥ 튼튼한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지향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우리의 믿음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6.	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8.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9.	우리는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 기본정책 - 10대 약속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2.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3.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4.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6.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7.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 이렇게 출제 됩니다!

- ◆ 토론, 연설, 대화 등 다양한 정치 상황을 가정하고, 정강정책을 올바르게 해석하는지 판별하는 유형
- ◆ 입법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가정하고 정강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는지 판별하는 유형

### TIP

정강정책 영역은 단순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당의 가치와 방향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 연습문제

1.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이 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다짐을 담고 있다. 아래 담화 중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 )

기현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정강정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다가올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을 담고 있어
재철 :	맞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명시했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편법과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해.
경원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도 강조됐어. 당원이라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우택 :	선명성 역시 중요한 덕목이야. 보수라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에 대한 내용만 긍정해야 해. 민주화 같은 진보 진영의 헤게모니에 좌우되면 안 돼
진석 :	통일 방안 역시 중요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북한과 무력충돌이라도 불사해야 해.

① 기현, 경원 ② 기현, 재철 ③ 경원, 우택 ④ 우택, 진석

2. 정강정책 중 <우리의 믿음>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래의 법안과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지은 것은?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표 :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여야 해. 독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견제하는 것이 옳다고 봄.

희룡 :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옳다는 것이야. 고작 독점 같은 이유로 시장에 개입 할 명분이 어디에 있겠어? 독점규제법은 폐지되어야 해.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민 :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책임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
재형 :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① (가) - 준표, (나) - 승민 ② (가) - 준표, (나) - 재형

③ (가) - 희룡, (나) - 승민 ④ (가) - 희룡, (나) - 재형

3.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이다. 다음 중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 )

재원 :	메가트렌드 예측이 경제혁신의 핵심이야. 우리 당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혁신기술, 펜데믹 등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해.
미경 :	맞아, 규제 인식 전환 역시 필수적이지. 기업이 준법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권장하고, 기존의 사전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해.
용태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책임도 다해야지.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야.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유력한 인재는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라도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국립연구소로 묶어두어야 해.
현진 :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도 필요하지. 지역경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경제혁신의 정신이야.

① 재원 ② 미경 ③ 용태 ④ 현진

4. 다음 대화는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이다.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 )

승호 :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은 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 우리 당은 돈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해.
준우 :	맞아.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법관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인규 :	좋은 의견이야. 하지만 법률도 서비스 아닐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죄를 감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주 :	배심 재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효율적인 선진형 분쟁 해결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

① 승호 ② 준우 ③ 인규 ④ 연주

5. 다음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자의 연설 중 일부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은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①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을 돌아보십시오. 코드인사에 맞춰 사법부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처럼 부렸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출마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부터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건강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당내에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③우리는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청년이 학습한 것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 확대가 꼭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규제를 양산하고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④권력을 획득해 언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우리의 진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답]

- 1.④ 2.② 3.③ 4.③ 5.④

# 2 당헌·당규

지방선거 출마자가 알아야 할 당원 규정과 지방조직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 1 당헌·당규란?

당의 헌법과 규칙으로, 당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과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 2 당원 규정

### 당원의 자격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 당원의 구분

#### ○ 일반 당원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

#### ○ 책임 당원

당비 규정에서 정한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 책임 당원 자격 부여 특례 조항(★★★)

1.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 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당원의 권리

당원소환제	당원소환은 전체 책임당원의 100분의 20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토론요구 및 발안권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당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 입당과 탈당

### ○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지만,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 제출 즉시 발생해!

## ○ 재입당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사·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Q. 징계처분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처분이나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어.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하지.

### 3 지방조직운영 규정

#### 시·도당대회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 유권자 수의 0.05%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시·도당 대의원의 구성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9.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직역별로 선임된 직능대표
12.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 시·도당대회의 기능

1.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2. 당헌 제18조 제 20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시·도당위원장 선출
4. 공직후보자 즉, 시·도지사 후보자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시·도당 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 ○ 사·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
6. 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을 선임
7. 각급 선거인단 구성
8. 당원협의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행위 추인

## 광역의원총회&기초의원협의회

시·도당에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둔다.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의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당의 지역 활동의 주체

## ○ 당원협의회의 활동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 후보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 연습문제

1. 다음은 (A)당원협의회의 12월 기준 당원 현황 일부이다. 이 중에서 책임당원 신분인 자는 몇 명인가? ( )

(A)당원협의회 당원 현황(12월)

번호	성명	나이	당원가입기간	당해 당비납부 횟수	비고
...	...	...	...	...	...
301	김○○	67	30개월	4회	-
302	양□□	27	2개월	1회	※ 시도당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자격부여
303	이○○	54	120개월	0회	-
304	박□□	72	360개월	11회	-
305	최□□	23	4개월	0회	-
306	함○○	51	0개월	0회	※ 전직 공무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당비 납부 완료
...	...	...	...	...	...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2. 아래의 대화는 당원 규정 해석에 대한 토론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

경호 :	당원은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으로 나뉘지.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한 당원을 의미해.
도읍 :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소멸은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된 후 7일이 지나야 이루어지지.
성동 :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험과 발안을 할 권리가 있어.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다면 당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의무를 가져.
한홍 :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이나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 ① 경호 ② 도읍 ③ 성동 ④ 한홍

3. 다음은 시도당 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의 대화이다. 옳지 않은 내용은? ( )

Q:	당의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주요 당무를 의결하기 위해 '시도당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시도당 대회의 대의원을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요?
기호 :	우리 시·도당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석기 :	사·도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당직자들 역시 참여 대상입니다.
은혜 :	대의원 구성원 수는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대 인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희경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정치중립성 유지를 위해 참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① 기호 ② 석기 ③ 은혜 ④ 희경

4. 다음 중 당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②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당세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시·도당, 중앙당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에 당선된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5. 아래의 명부는 어느 당직자가 명부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각 인원을 광역의원총회 소속 또는 기초의원협의회 소속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잘못 분류된 인원은 총 몇 명인가? ( )

<기초 및 광역 의원 명부>

번호	성명	직책	분류
...	...	...	...
11	민○○	가평군의원	광역의원총회
12	진□□	경기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3	최○○	서울시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4	이□□	대구시의원	광역의원총회
15	양□□	강원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	...	...	...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6. 다음은 어느 당직자가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조직운영 규정을 설명하는 강연 내용 중 일부이다. 아래의 강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사회자 :	그럼 강사님의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조직 운영규정 관련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	<p>①국민의힘 사·도당대회는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당헌 제18조 제20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회 선출 등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사·도당에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가 있는데요. ②광역의원총회는 원내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원내부대표는 별도로 둘 수 없습니다. ③한편, 기초의원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으로 구성됩니다.</p> <p>그렇다면 이번엔 당원협의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④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사·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원협의회의 활동범위는 무엇일까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여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p>

[정답]

- 1.③ 2.② 3.④ 4.④ 5.④ 6.②

## 2.

### 대북정책

# 1

## 북한 체제의 특성



[강의 보기]

### 1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일당독재체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신정 왕조체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헌법은 최고법으로 존재하고 국회가 정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순으로 위상이 낮아진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이 최고 권위를 지니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당규약, 북한 헌법, 법률 순으로 위상이 낮아진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 말씀’이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도 북한에 어떤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 2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도 불린다.

북한도 법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나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투표소에 걸린 포스터에도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라고 되어 있다.

## 3 평등을 강조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북한

북한은 모든 인민을 3계층(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51개 부류로 분리하였다. 핵심계층은 항일투쟁 참가자 및 그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전사자 가족, 빈농·고농·노동자 출신 및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공로자, 지도자와 체제에 충성을 다한 사회적 표본이 되는 영웅 등이 해당된다. 동요계층은 일반노동자·기술자·농민·사무원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된다. 적대계층은 지주·부농·예속자 본가의 후손, 친일파·치안대 가입자와 그 가족, 종파분자, 군입대 기피자, 정치범출소자, 월남자 가족 등이 포함된다.

핵심계층	항일 투쟁 참가자 및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가족, 영예군인, 체제에 충성을 다한 표본이 되는 영웅 등
동요계층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및 가족 등
적대계층	지주, 부농, 예속자 본가의 후손, 친일파 및 가족, 정치범 출소자 등

북한이 사회계층을 구분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 색채를 가진 인물을 제거·격리시키고 유일독재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를 강행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사회계층 구분은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교육혜택·직업배치 및 승진이 결정되어 이를 통한 소득 격차의 발생, 생활수준에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 사회주의 성격에 위배된다.

## 4 1990년대 이후 변화하는 북한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란 대량 아사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도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에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국경을 통해 밀수가 이뤄지면서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가 유입됐고,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2 북한의 핵전략

## 1 대북정책의 핵심: 북핵 문제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역대 정부가 해결에 매달려 왔지만 오히려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볼 때 핵 국가가 출연할 때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가 흔들렸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그어 방어선을 한반도 아래로 내렸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군이 도와주려 오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6.25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1964년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1967년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尼克son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69년에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대만에서 손을 떼게 된다.

김일성은 6.25 전쟁 때 맥아더가 북중 국경과 국내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겪었고 이후 중국의 핵 보유 후 미국의 반응을 보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196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를 보고 체제위협을 느껴 핵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통치 시기 2006년 첫 핵실험을 했고, 2009년에 2차 실험을 했다. 김정은이 2012년 본격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4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당규약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으며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 그해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당 창건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소형핵탄두를 탑재하여 남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자 안보리이사회 결의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첫 대북제재 결의를 했고, 2017년 12월까지 총 10차례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흔히 유엔제재로 북한 주민이 아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유엔제재는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 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핵 문제는 역대 정권의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펼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은 과거 정책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했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연동해 놓았다는 것이다. 양자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성공의 판가름에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 의도대로 평화가 정착되어가면 남북간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같은 남북 인도적 문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같은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4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 정책 평가

##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2 북한인권법 사장화

2016년 11년 만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사장되었다 할 수 있다.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4년째 공석이다.

### 3 2019년 북한 어부 북송사건

2019년 11월에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북한에 보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손을 뒤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난민을 북송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때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이 범죄자이고 경제적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어부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난민 북송에 대해 항의할 명분이 약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4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구실삼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하고 폭파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를 하였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전단살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5 국민의힘 대북정책 및 기조

국민의힘 <10대 약속> 중 10번째 약속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 1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불용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호혜적인 대화와 안정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3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출산과 군사기술혁명 및 안보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첨단 자주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태세를 강화한다.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와 보상, 그리고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6 올바른 통일 정책

## 1 통일의 주역이 될 북한 밀레니얼 세대

통일은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 낼 것이다. 북한의 1세대와 2세대는 6.25 전쟁을 겪거나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작동할 때 인생의 전반기를 보낸 세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장차 북한의 중추세력인 50대 이상이 될 20~30년 후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 2 올바른 통일 정책이란?

통일은 우리 헌법에 따른 평화적이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히 외부 세계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통일 정책이다.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올해는 남북한 분단 77주년이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중 북한체제 특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

가:	북한은 수령독재체제야. 조선노동당 당 규약, 헌법, 일반법보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지시나 방침이 우선하고 있어.
나: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어. 모든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인 3개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 출신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다:	북한에도 한국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한때는 단속을 통해 막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어
라: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어
마:	북한은 선거제도가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뽑고 싶은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고 있어

① 가, 다 ② 나, 마 ③ 나, 라 ④ 다, 마

2. 다음 중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 )

가: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어. 한국을 겨냥한 선제타격은 언급한 적이 없어
나: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개발했어.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
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해왔다고 밝혔어. 심지어 2018년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도 포함해서 말야
라:	북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的大북제재는 북한의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

①가 ②나 ③다 ④라

3.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미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 ②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③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한다.
- ④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다.

4.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집행 사실과 가장 먼 내용은? ( )

가:	2019년 11월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였어
나: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	정부와 여당은 남한 단체가 휴전선 일대에서 살포하던 대북전단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어

①가 ②나 ③다 ④라

5.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래의 <10대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대북정책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 지은 것은? ( )

(A)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 (중략) ... 북한이 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한에 들여왔던 미국 전술핵과 북한의 핵을 모두 제거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나: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만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해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어.

(B)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의 탱크나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막아야 해
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만이 아닌 야외기동 훈련도 필요해

① (A) - 가, (B) - 다 ② (A) - 가, (B) - 라

③ (A) - 나, (B) - 다 ④ (A) - 나, (B) - 라

6. 우리의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

가: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해.
나: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서 완전 폐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해
다: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해
라:	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 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특히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 ①가 ②나 ③다 ④라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③ 5. ④ 6. ②

### 3.

## 공직선거법

이 자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 선거운동 일반



[강의 보기]

##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정당법 제37조)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은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2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3 선거운동기간의 예외(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등이 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

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법제60조의3)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4 투표참여 권유활동

- 주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각종 단체나 개인(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자신의 명의를 밝혀 스스로 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의 명의로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님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할 수 있음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 2 선거운동기구

## 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선거운동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지역구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다만, 식품점객 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2 선거운동기구에 홍보물 설치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는 그 외에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3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함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은 시·도의원선거는 10인 이내, 자치구·시·군선거는 8인 이내의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 문자메시지 전송

- (1)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기 : 상시
- (3) 방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4)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 이내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문자 외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함

## 2 전자우편 전송 등

- (1)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기 : 상시
  - (3)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함

## 3 명함 배부

### (1) 규격·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
- 명함의 종류, 색상, 재질과 그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예비후보자는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수량도 예비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됨

### (2)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3)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4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 (1) 층수·면수 : 1층, 8면 이내
- (2)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3)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 횟 수 : 제한 없음
- (4)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5 어깨띠 및 표지물

- (1) 주체 : 예비후보자
  - (2)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6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방 법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4 당내경선

## 1 당내경선의 개념

-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당내경선에는 ①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우, ②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이 법 제57조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함.

## 2 당내경선운동(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 (1) 당내경선사무소 : 당내경선사무소 1개소
- (2) 경선후보자 명함, 경선풍보물

(3)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 5 후보자의 선거운동

##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 (1) 선거운동기구

- 설치수 : 선거사무소 1개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 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2)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시·도의원선거 : 10명 이내, 자치구·시·군선거 : 8명 이내)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임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2 인쇄물 이용

### (1) 후보자의 명함

#### ○ 배부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배부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 ○ 게재사항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 (2) 선거벽보

- 게재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3) 선거공보

#### ○ 책자형 선거공보

- 면 수 : 8면 이내
- 게재내용(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 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

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전과기록 :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

## ○ 점자형 선거공보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전대상도 아님

## 3 시설물 이용

### (1)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규격 : 제한 없음

○ 게시방법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음

### (2) 거리게시 현수막

○ 수량 :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 장소를 옮겨 게시하는 행위 가능. 다만, 선거일에는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 종류 및 규격(금액)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 옷 : 개당 단가는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3만원 이내)
    -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가능

##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1) 주 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3) 내 용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4) 연설·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5)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 (6) 자동차와 확성장치의수량 등

## (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자동차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

※ 4개 동시선거의 경우 특례규정(법제216조)에 의하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나)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 2)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 (7)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6 인터넷광고 이용

## (1) 주 체 : 후보자

## (2)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3)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4) 방 법

- 인터넷광고의 형식, 크기, 규격은 제한 없음

# 6 정치자금

## 1 정치자금의 개념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이러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야 함

##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는 ①본인의 자산, ②정당의 지원금, ③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④후원금, ⑤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품이 있음



※ 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율이나 가격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 3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 (1) 후원회지정권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2) 후원회의 모금한도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3)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①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음
  - ②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음
- (4)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한도 : 500만원

## 4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 (1) 수입처리 회계원칙
-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함
  -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함
  -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로는 기부 받을 수 없음

## 5 정치자금의 지출

### (1) 선거비용의 정의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함

### (2) 선거비용의 범위

- ①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②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 누구든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따라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전대상도 아님

### (3)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출함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 ⑥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 ⑦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⑧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다과 등의 비용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제공 비용을 제외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⑨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 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4회 초과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4)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 4천만원 + (인구수×100원)
-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 + (인구수×100원)

### (5) 정치자금 지출처리 회계원칙

-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현금지출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지출과목을 준수하여야 함

## 6 선거비용 보전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7 주요 제한·금지 사례

## 1 기부행위

### (1) 기부행위의 개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에 아래의 유형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음

- ①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의례적 행위

- ③ 구호적·자선적 행위
- ④ 직무상의 행위

### (3) 주체별 제한내용

- (가) 지방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문하고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주례행위 포함)
- (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 선거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다) 제3자(누구든지)
  - 선거에 관하여 상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5) 할 수 없는 사례(예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돈을 넣어 현금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이 지역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관내 식당에서 언론인,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회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2 매수행위

### 매수행위의 개념

선거관계자 등에 대하여 당선·낙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

### 매수행위의 유형

- 1) 투표나 당선·낙선의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매수하는 행위
-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등의 각종 기관·단체·시설을 매수하는 행위
-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를 대상으로 매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선거운동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7)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8)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9) 당내경선후보자로 선출과 관련하여 그리고 경선선거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10) 재산상의 이익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선거인,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11) 기타

###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 허위사실공표 금지

##### 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2)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3)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또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를 하는 행위

#### 후보자비방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

## 5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 공무원 등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주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주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

### ○ 상시금지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6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시기별 유의사항

###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7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 사조직설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유사기관설치 금지

-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 8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와 선거에 관한 인쇄물 등 배부·게시 등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허용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 9 의정활동보고의 허용·금지

- 주 체 : 지방의원
- 금지기간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사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8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1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1)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2)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3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 )

- 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의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② 입후보예정자가 음력설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리에서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밝히는 행위
- ④ 시민단체가 선거일을 100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 아래는 지방선거의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실무진의 대화 중 일부이다. 다음 중 틀린 발언을 한 사람은?( )

지현 :	당내 경선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선합의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꾸리는 게 원칙이며, 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인 :	맞습니다.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으로 구분되고, 이 중 비당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요.
창완 :	경선에 탈락한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완득 :	우리 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지만, 이의 제기는 당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역시 필요해요.

- ①지현 ②우인 ③창완 ④완득

3. 다음 중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 ①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정월대보름 · 연말연시 · 농번기 · 성년의 날 ·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 ③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각 선택하여 한번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④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에 규정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

- ①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 ②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후보자의 아들이 지출한 불법 기부행위 비용
-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5.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① 선거일 전 6일전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반이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6.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①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언급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중 일부이다. 틀린 내용을 고르면? ( )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가 제일 예민할 부분일 건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의 특정 사회단체에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②자원봉사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통신비용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선거기간 중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물이나 돈봉투를 배부하는 행위를 할 시에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매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구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④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의 대가로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수당 외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가능합니다.

8.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①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상대방에게 주례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상시 제한된다.

9.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② 공표된 내용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허위사실공표는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이 있으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처벌된다.
- ④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10.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

- ①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②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 비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1.④ 2.③ 3.④ 4.① 5.② 6.④ 7.④ 8.② 9.③ 10.④

## 4.

###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강의 보기]

# 1

### 넓게 보세요

21.10.10.~21.12.04. 만 12세 이상

### 코로나 사망자

백신 접종자  
549명

백신 미접종자  
543명

이 자료를 토대로 백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사망자 수가 비슷하죠? 오히려 접종자가 6명 더 많습니다. 이걸 보고 백신이 무용하다 주장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너무 좁게 본 거예요.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사망자만 보지 말고, 사망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해요.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인구

21.10.10 ~ 21.12.04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백신 접종자 549명	백신 미접종자 543명

당시 백신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80%였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이 4배나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자수, 사망률 구분해서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참고로 연령 분포 등을 보정하면 실제로는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9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의 대답 중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갑: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에 불과했다.

을: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갑: \_\_\_\_\_.

- 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해.
- ② 무단횡단을 할 경우 차가 오는지를 더 민감하게 살피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낮아지기 마련이야.
- ③ 절대다수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거야.
- ④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거야.

# 2 표와 친해지세요

## 1 비교증감란에 보이는 빈 삼각형(Δ)

다음은 2021년도 노원구 성인지 예산안 자료의 일부입니다.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4	11,364,624	24,763,945	△13,399,321	△54.11%
일반회계	23	11,346,624	24,763,945	△13,417,321	△54.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8,000	0	18,000	순증

이 기호(Δ)는 회계에서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언뜻 증가분을 나타낸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2021년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이만큼 감소했음을 뜻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는 곳도 있긴 한데, 구나 시에 따라 이 기호를 쓰는 곳도 많습니다.

## 2 단위

표의 오른쪽 위에 ‘단위: 천원’이라고 나오죠? 이는 표의 1이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표에 나타내려면 단위를 천원을 쓰더라도 가로폭이 많이 필요하죠? 이럴 땐 ‘백만원’을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이는 표의 1이 1,00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단위: 천원	단위: 백만원
1	1,000원 (천원)	1,000,000원 (백만원)
1,000	1,000,000원 (백만원)	1,000,000,000원 (십억원)
1,000,000	1,000,000,000원 (십억원)	1,000,000,000,000원 (조원)

그리고 표를 빠르게 읽는 꿀팁! 쉼표가 찍히는 단위인 천/백만/십억/조를 여러 번 소리내보면서 입으로 외우면 됩니다.

# 연습문제

2. 다음 금액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은?

세입: ① 974,614 (단위: 백만원)	총계: ② 1,031,569,943 (단위: 천원)
-------------------------	------------------------------

①

- ① 9십7만4천6백1십4원
- ② 9백7십4억6천1백4십만원
- ③ 9천7백4십6억1천4백만원
- ④ 9만7천4백6십1억4천만원

②

- 1십억3천1백5십6만9천9백4십3원
- 1백억3억1천5백6십9만9천4백3십원
- 1조3백1십5억6천9백9십4만3천원
- 10조3천1백5십6억9천9백4십3만원

### 3 증감률 :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frac{\text{비교값} - \text{기준값}}{\text{기준값}} \times 100 (\%)$$

1에서 2로 1만큼 증가 ↗ % 증가  
 2에서 3로 1만큼 증가 ↗ % 증가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4	11,364,624	24,763,945	△13,399,321	△54.11%
일반회계	23	11,346,624	24,763,945	△13,417,321	△54.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18,000	0	18,000	순증

앞의 표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값으로, 2021년 예산액을 비교값으로 두면, 분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분자는 비교증감이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한 게 증감률이 됩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 1에서 2로 1만큼 증가 ↗ % 증가

만약 예산이 1에서 2로 두 배 증가했다면 몇% 증가한 것일까요? 2배니까 200% 증가했다고 답하기 쉬운데,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기준값인 1을 분모로, 비교값에서 기준값을 뺀 2-1을 분자로 한 후 100을 곱하면 100%가 나오죠? 네, 100% 증가했다고 해야 합니다.

### 2에서 3로 1만큼 증가 ↗ % 증가

그렇다면 2에서 3으로 1.5배가 된 것은 몇% 증가한 것일까요? 기준인 2를 분모로, 비교값에서 기준값을 뺀 3-2를 분자로 한 후 100을 곱하면 50%가 나옵니다. 정리. X배가 되었다고 하면  $(X-1) \times 100(\%)$  증가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증가‘량’은 1로 같지만, 증가‘율’은 다르다는 데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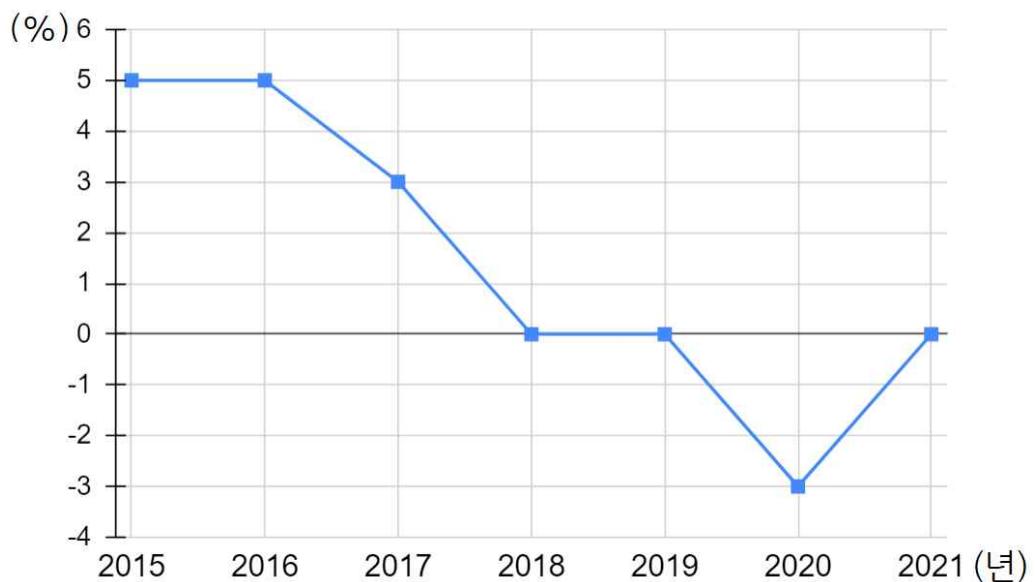
## 연습문제

3. 다음 상황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1년 전 5만원이었던 S전자의 주식이 현재 10만원이 되었다.

- ① 주식 가격이 5만원 증가했다.
- ② 주식 가격이 2배 증가했다.
- ③ 주식 가격이 100% 증가했다.
- ④ 주식 가격이 200% 증가했다.

4. 다음 그래프는 A국의 전년 대비 GDP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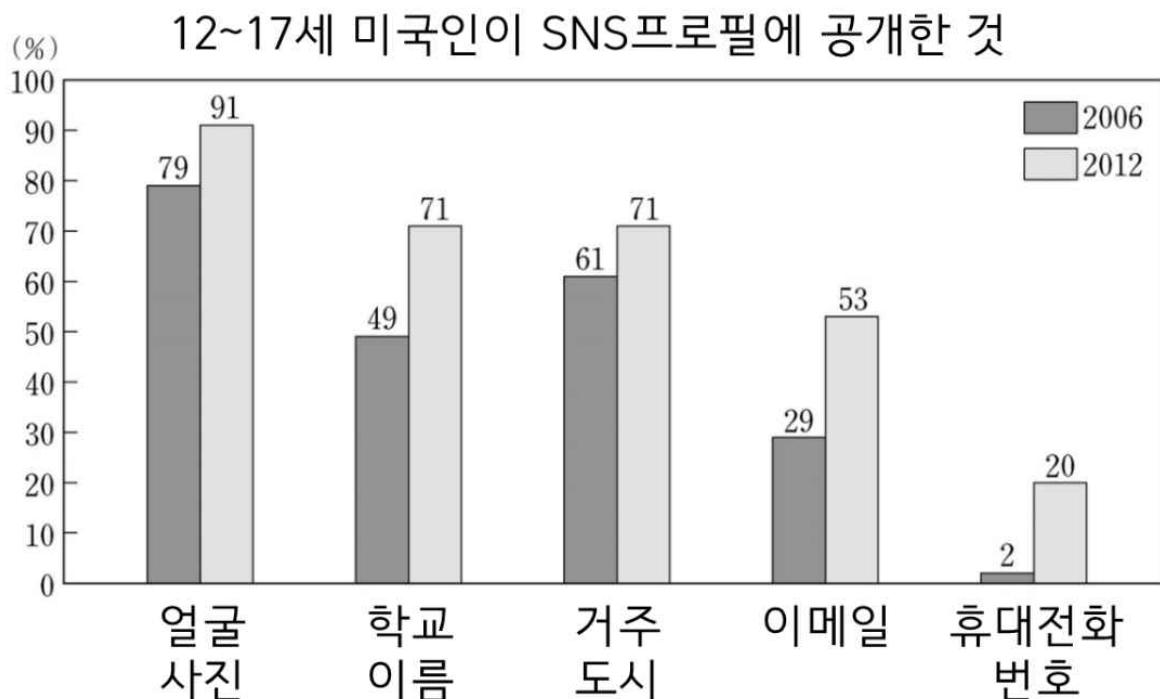
- ① 2016년의 GDP 규모가 2020년보다 크다.
- ② 2017년의 GDP 규모가 2019년보다 크다.
- ③ 2021년의 GDP 규모가 2020년보다 크다.
- ④ 2015년과 2016년의 GDP 규모는 동일하다.

## 4 %와 %p 의 차이

percent(%) :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교하는 양의 비율

percentage point(%p) : 비교하는 백분율 간의 차이

'percent(%)'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교하는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percentage point(%p)'는 비교하는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끼리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가 아니라 %포인트를 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출제자들이 %와 %p를 헷갈려서 복수정답으로 판정된 문항이 있었어요.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휴대전화번호 부문은 18%가 증가했다.”

⇒ 2%와 20%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18%가 아니라 18%p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즉, p가 빠진 위 묘사는 틀렸고, 2015학년도 수능에서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연습문제

5. 노동부의 공무원 A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에 실업률이 2%에서 3%로 증가하였다는 통계수치를 기초로 A가 작성한 보고서의 다음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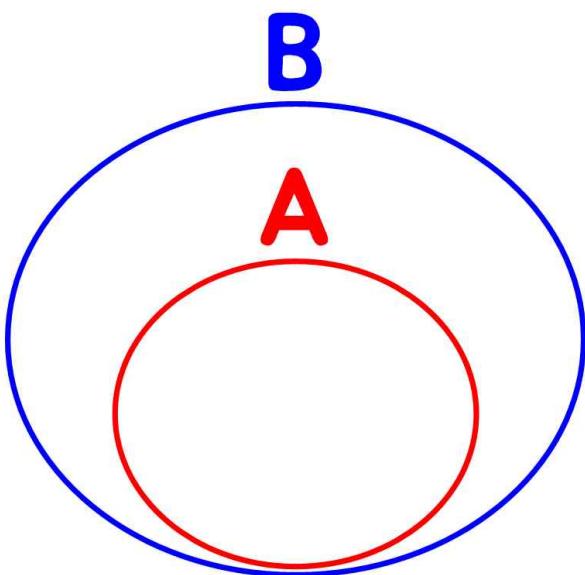
- 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였다.
- 나.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50% 증가하였다.

- ① ‘가’는 ‘1%’를 ‘1% 포인트’로 잘못 표기하였다.
- ② ‘나’는 %를 %p로 바꿔야 적절하다.
- ③ ‘가’, ‘나’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가’는 실업률이 조금 올랐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나’는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는 인상을 준다.

# 3

## 논리적 관계를 잘 살피세요

### 1 조건문



- A이면 B이다.

=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 B이어야(만) A일 수 있다.

= A이기 위해서 B이어야 한다.

- “A이면 B이다.”에 대한 반박

: 반례(A이지만 B가 아닌 경우) 제시

먼저 조건문 “A이면 B이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A이면, 그것은 B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는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B이어야(만) A일 수 있다.”, “A이기 위해서 B이어야 한다.”로 바꿔서 나타내도 의미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인간이면, 그것은 포유동물이다”는

“어떤 것이 포유동물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어떤 것이 포유동물이어야만 그것은 인간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포유동물이어야 한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참고로 조건문을 반박하는 방법은 반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즉, A이지만 B가 아닌 경우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취업청탁을 하면 합격한다”의 반례는 취업청탁했지만 합격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는 겁니다.

## 연습문제

6.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12~2013년 OO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는 총 5,286명이다. 이중 사장, 국회의원, 장관, 도·시·군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취업청탁 대상자는 625명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51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취업청탁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갑희는 당시 OO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중 한 명이었고, 최종 합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① 갑희가 최종 합격자라면, 취업청탁 대상자일 것이다.
- ② 갑희가 취업청탁 대상자였다면 최종 합격했을 것이다.
- ③ 갑희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업청탁 대상자여야 한다.
- ④ 갑희가 취업청탁 대상자가 아니라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 2 두 문장 X, Y의 논리적 관계

양립가능한 관계: X와 Y가 함께 참일 수 있는 관계

반대관계: X와 Y가 함께 참일 수 없는 관계

소반대관계: X와 Y가 함께 거짓일 수 없는 관계

모순관계: X와 Y가 함께 참일 수도, 함께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

함축관계: X가 참이면 반드시 Y도 참일 때 X가 Y를 함축한다고 함

무관한 관계: X가 Y를 함축하지도, Y의 부정을 함축하지도 않는 관계

### 연습문제

7. ⑦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⑦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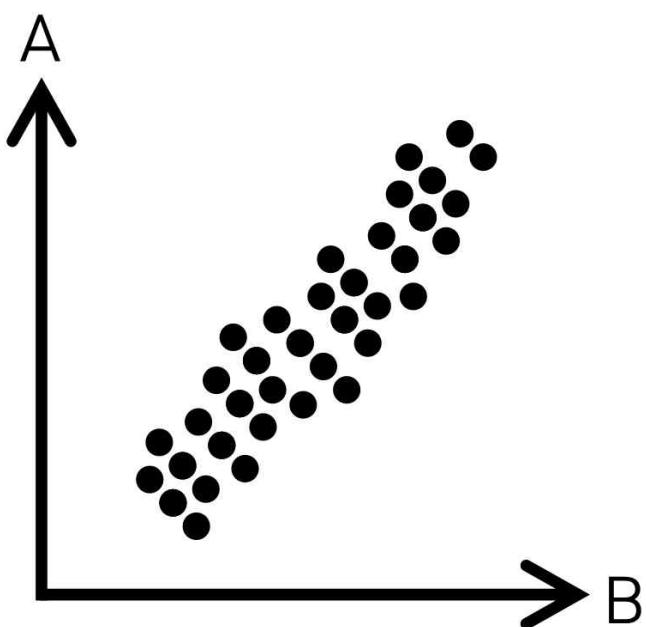
③ S에 투자하는 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S에 투자하는 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④ 서울시 시의원이 모두 환영식에 참석하였다.

A씨는 서울시 시의원인데도 환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 3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가능성1.  $A \rightarrow B$

가능성2.  $A \leftarrow B$

가능성3.  $A \leftarrow C \rightarrow B$

A와 B가 양의 상관관계, 즉 A가 증가함에 따라 B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세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 \rightarrow B$

$A \leftarrow B$

$A \leftarrow C \rightarrow B$

A가 B의 원인이거나, B가 A의 원인이거나, 혹은 A와 B는 공통원인 C의 결과이거나.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폭력사건 발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 즉 어느 하나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하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면 우스꽝스럽겠죠?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와 폭력사건 발생 수 증가는 모두 공통원인 기온 상승에 따른 각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연습문제

8. 다음 추론들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추론을 묶은 것은?

- ㄱ. 갑은 열심히 공부했고 우등상을 받았다. 따라서 을에게 우등상을 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해왔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 ㄷ.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이, 신용이 낮으면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면, 모두의 신용이 높아질 것이다.
- ㄹ. 한국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률도 OECD국가 중 1위일 것이다.
- ㅁ.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34세였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34세 전후로 사망했을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 4 차이에 주목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차원의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출처: 2015년 5급 공채 상황판단 33번

여러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일단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상위법령 사이의 차이, 또 개정 전 조례와 개정하려는 조례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 OO군의 조례안 개정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 ·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최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 전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M군 조례안(개정 전)	M군 조례안(개정 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b>위법</b> 또는 <b>부당</b>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b>최소하거나 중지</b> 시킬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b>위법</b>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b>최소하거나 중지</b> 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개정 후와 비교해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개정 전에는 위법할 때도 취소 중지가 가능했고, 부당할 때도 취소 중지가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위법할 때는 취소 중지가 가능하지만, 부당할 때는 취소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어요. 즉, 군수의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이처럼 사무처리에 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군수의 취소·중지권을 배제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 ※ 대법원 판단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연습문제

9. 다음은 모 정당의 당헌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①~④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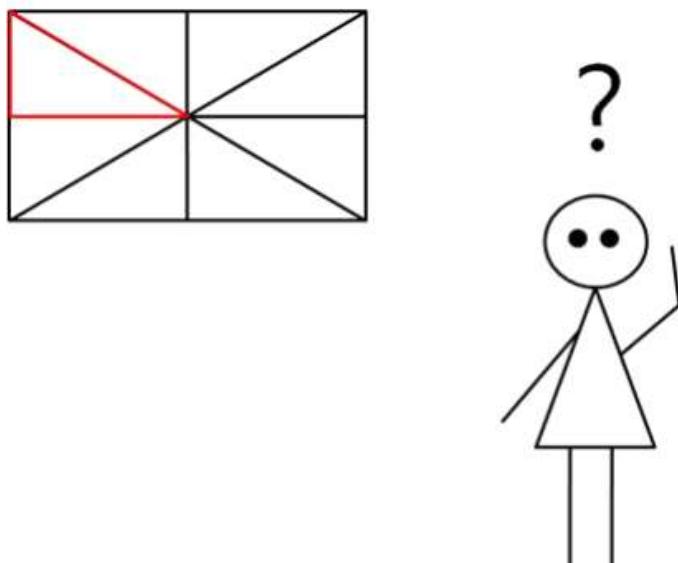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①	제OO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OO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u>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제OO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2. 시·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u>상벌안</u> 의 확정	제OO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2. 시·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u>포상안</u> 의 확정
③	제OO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③ 중앙당 <u>공직자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정원이 짹수일</u>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훌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OO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③ 제2항에 따라 <u>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u>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조 (기능)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제□□조 (기능)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제□□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제□□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주인을 받아 임명한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되었군.
- ② ②: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었군
- ③ ③: 여성 위원 비율이 전보다 축소되었군.
- ④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었군.

# 5

##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오른쪽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삼각형 몇 개죠?

만약 16개라고 답한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으셨네요.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답은 1개입니다. 간단하죠?

# 연습문제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A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 ① 개의할 수 없다.
- ② 의결할 수 없다.
- ③ 의결할 수 있다.
- ④ 27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정답>

- 1. ③    2. ③    3. ④    4. ①    5. ④    6. ②    7. ①    8. ①    9. ③    10. ②

## 5.

### 외교·안보



[강의 보기]

# 1

## 국민의힘 당헌·당규 속 외교·안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지향해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정책 <10대 약속>

####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경제안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2 한미관계

## 1 한미동맹의 역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 16개국의 파병을 이끌어냈습니다. (※ 물자지원국-39개국, 의료지원국-5개국)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 관계의 근간이자 유일한 동맹인 한미 동맹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쳤고,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미관계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더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해왔고, 21세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원숙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2 한미동맹의 현황

70년 전부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균열과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동맹의 위기, 동맹의 와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과도 같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평시에 계속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준비태세(Readiness)를 강조하는데,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훈련이 2019년부터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훈련들마저 야외 실기동 훈련(FTX)이 아니라, 3년 연속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3년 넘도록 실기동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역량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협상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제기되었고, 2020년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에 반영되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 문구가 삭제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주한 미국대사는 1년 넘도록 공석인 상황이며, 이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길었습니다.**  
(※ 이명박정부-약 2개월, 박근혜정부-약 5개월)

미국은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차기 주한대사를 지명했는데, 결국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뽑힌 뒤에야 정식으로 부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사 인선을 일찌감치 발표한 것과 달리, 주한 미국대사직이 역대 가장 오랫동안 비워진 상황을 두고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3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한미동맹의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악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기술, 글로벌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뉴프론티어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북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에 갇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내 관련국들과의 적극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3 한중관계

## 1 한중관계의 역사

체제 대립과 6·25 전쟁으로 한중은 소원한 관계로 이어져 오다가 1988년 7월 대한민국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한중 수교의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8월, 한중 간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고 이후 한중 간 교류가 경제, 문화, 사회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20년 2,450억 달러로 약 38배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4.6%)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2 한중관계의 현황

2021년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지니는 비호감도는 ▲2019년 51.5% ▲2020년 59.4% ▲2021년 73.8%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 자료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

중국에 대한 비호감 원인으로는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65.2%)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은 2020년 35.3%에서 2021년 43.8%로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을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4.3%에서 61.8%로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문화적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한령(限韓令) ▲한국 단체관광 금지 ▲비자발급 거부 ▲통관 불허 ▲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게임산업 판호 발급 중단 등 유무형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는 약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한편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며 3불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3불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중국의 태도가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구려사 왜곡 ▲한복·김치를 중국 전통 문화로 소개하는 등 문화, 역사를 포함한 문화 공정(工程)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중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드, 역사, 문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만큼이나 국내 반중 감정에 악영향을 끼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부당한 발언과 행동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격은 물론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3 한중관계가 가야 할 길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를 구현해야 합니다.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 기존 협력기제의 충실히 이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및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중 고위급 핫라인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4 한일관계

## 1 한일관계의 역사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했습니다. 폭압적인 식민지정책에 맞서 국내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이 이어졌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후, 1965년 이뤄진 국교 정상화에도 양국은 경직된 관계를 이어오다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 2 한일관계의 현황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었던 상처를 비롯해 주권, 과거사 문제들은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신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했는데, 안보 공조 약화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국 종료 방침을 보류하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행동 역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매우 강경한 대일 외교정책 기조를 내세워 왔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언행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양국 주요 사안에 대해 임기 초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의 뚜렷한 변화없이 기조를 바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원칙과 기준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3 한일관계가 가야 할 길

첫째,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 즉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 5 경제안보

### 1 경제안보 개념의 부상

미중 경쟁 및 코로나 대유행 속에 자국중심주의가 국제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공급망·무역·투자·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에 있어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국내 특정 상품의 공급을 한 국가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공급망 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이후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 해외 대응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일본은** 2020년 이래 정부 핵심 정책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안보일괄추진법(가칭)을 추진하고 경제안보장관 직책을 신설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 하에 사이버 및 신흥기술 조직 신설을 통해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안에는 경제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기술파트너십 부서 신설 지시를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활용해 전략물자 수급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쿼드(Quad) 네트워크 구축 발판으로 활용해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위기에 여러 정부조직들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6 재외동포

## 1 재외동포의 정의 및 현황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하고, 재외동포는 외국 거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합니다. 재외동포 수는 현재 기준 약 730만 명입니다. (2021년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기준)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기대가 상승하면서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정부기구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 현행 정책의 한계

해외출국자가 2011년 1,2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133% 가까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도 약 191%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귀국지원, 방역물품지원, 응급의료지원 등 기존과 다른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수요가 발생한 반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3.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첫째,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국민 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기업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재외동포 권리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미래산업 분야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 및 관련 제도 정비, 해외 입양 동포 모국과의 유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한미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은?

가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한 국가로,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 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게 전환될 것이다.
라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2. 다음 중 한중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하게 됐다.
나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이다.
라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의 정상은 서로 한국과 중국을 서로 한 번씩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3. 다음 중 한일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 국민의 고통에 대한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지소미아 협정은 종료된 상태이다.
다	일본이 과거사·주권 문제를 완전하게 사과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과 어떤 교류와 소통 노력도 해서는 안된다.
라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새로 임명한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일본 외무상 및 총리와 회담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4. 다음 중 경제안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경제와 안보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외교·안보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의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	중국을 통해 요소를 가장 저렴하고 가까운 곳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수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
라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①가 ②나 ③다 ④라

5. 다음 중 재외동포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다.
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 중 대통령 선거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라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다.

- ①가 ②나 ③다 ④라

6. 다음 중 국민의힘 강령 속 외교·안보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대한 실현한다.
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①가 ②나 ③다 ④라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④ 5. ④ 6. ①

## 6.

### 안전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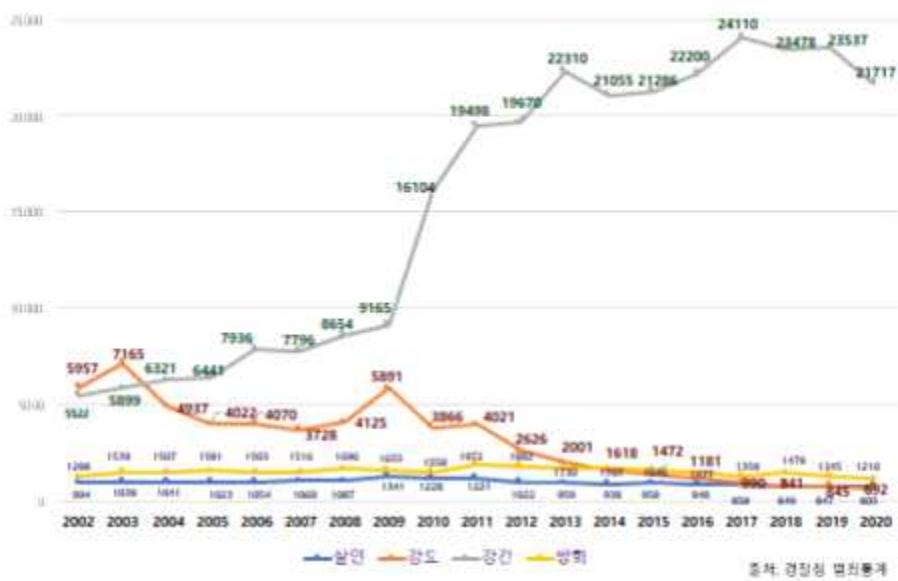
# 1

## 범죄 현황

[강의 보기]

### 지난 20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추이: 성범죄의 증가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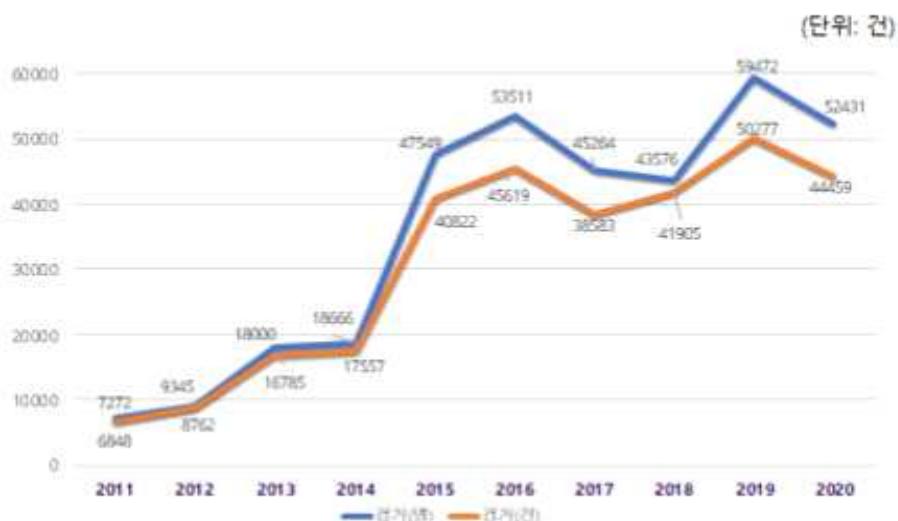


<지난 20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추이> 통계를 통해 미래의 범죄 양상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색 라인은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2만 건 이 넘는데 강제 추행까지 포함한다면 폭발적인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강력범죄 중 폭발적 증가 추세인 강간죄를 감소시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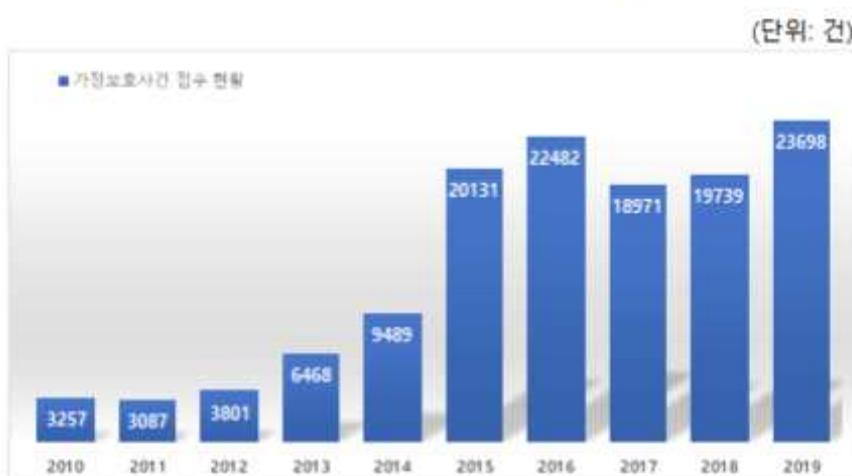
##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 가정폭력 검거 현황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4 & 2020

### 가정보호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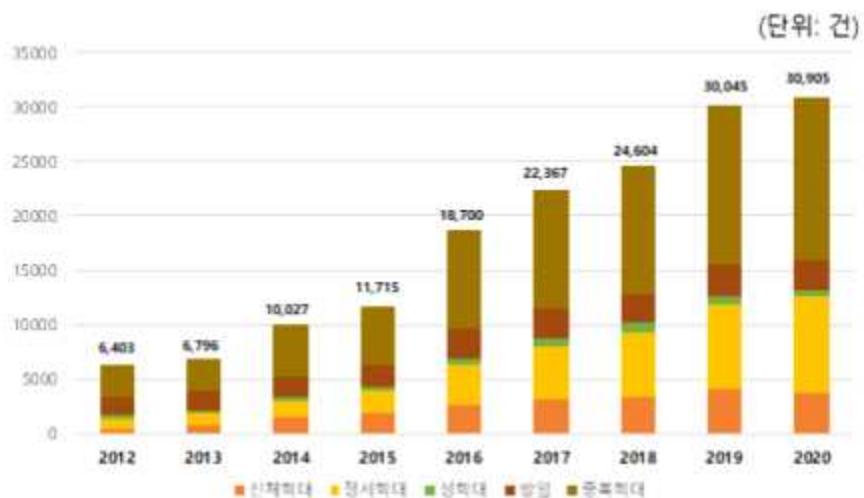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건사와 병관으로부터 승치된 사건  
을 말함

출처: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집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가정폭력'

<가정폭력 검거 현황>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 기소 건이 5만 건이 넘고, <가정보호사건 현황>을 보면 상당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양한 보호처92분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선고되었습니다.

## 최근 아동학대 발생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최근 아동학대 발생추이> 통계를 보면, 2020년 3만 건 돌파하여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웃, 시민들의 신고로 아동학대 발굴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아동학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결국 미래 세상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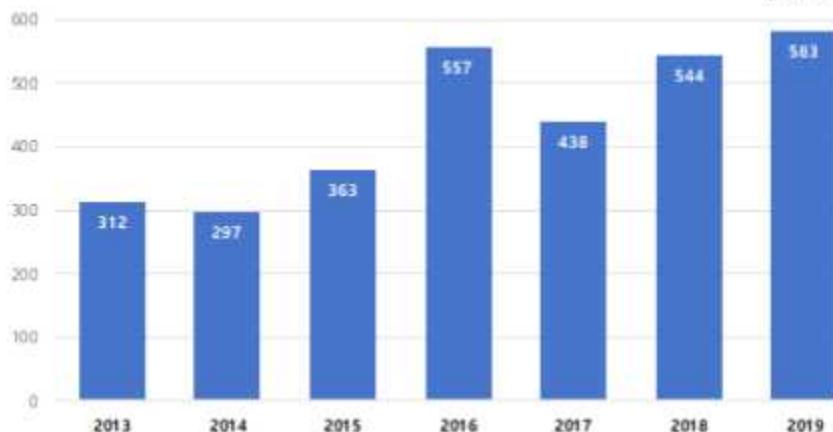
반드시 아동학대를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증가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확보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 스토킹 범죄

### 최근 스토킹 범죄 발생추이

(단위: 건)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 : 스토킹 처벌법 적용 이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했음. 실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최근에 많은 주목을 끄는 것이 강도사건은 줄었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사건들 은밀하게 일어나는 파트너 폭력 등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그것을 시사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스토킹 범죄의 통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0년 입법되어 2021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통계가 공식화되는 시점에는 금년도 1년 치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발생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 통계에서 보여주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는 지속적 괴롭힘이므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 신고에 의해서 제재됐던 스토킹 범죄 역시 증가 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이일 가능성성이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통계를 보시면 결국은 강도사건 등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범죄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이지만, 집안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는 부모 자식 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등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 신변보호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3 소년 범죄자

#### 소년범 재범율

(단위: 명, %)



출처: 검찰청 소년범죄자 재범관련 통계

소년범들은 언제나 소년범이 아니고 몇 년 후에는 모두 성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소년 사법체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구축 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사회 안전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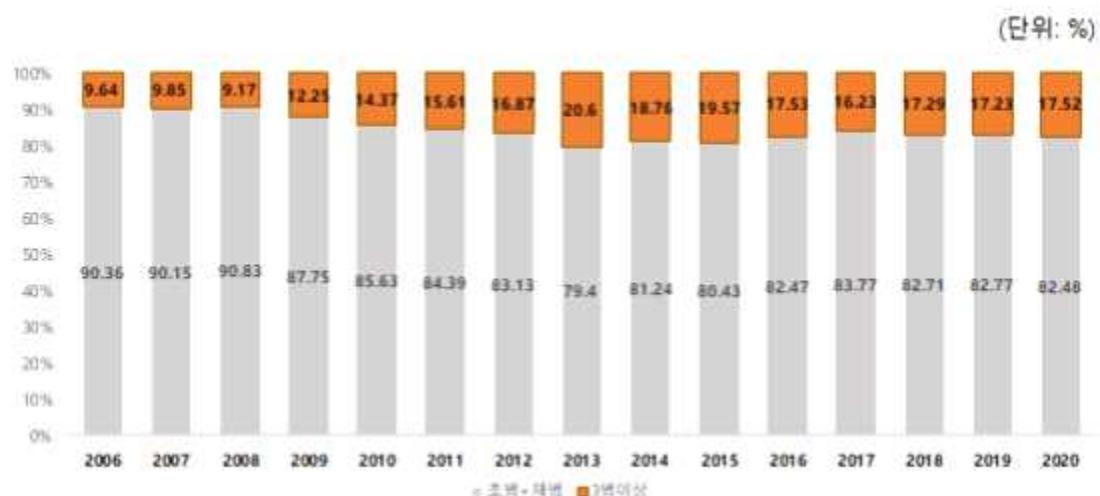
이 통계를 보고 ‘아 소년 범죄가 줄었네’ 하면서 기뻐하시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이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관련된 통계는 다 감소 추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나 정작 문제는 처음 소년기 때 범죄를 저질러서 편입되는 초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과 비교를 해보시자면 2012년도에는 거의 60%정도의 초범자 비율이었는데, 2020년을 보면 거의 70%정도가 초범자 비율이 됩니다. 초범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초범자 비율이 늘었을까요?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던 재범자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범죄학자들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초범자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범죄를 생전 저지르지 않던 아이들도 범죄에 쉽게 유인된다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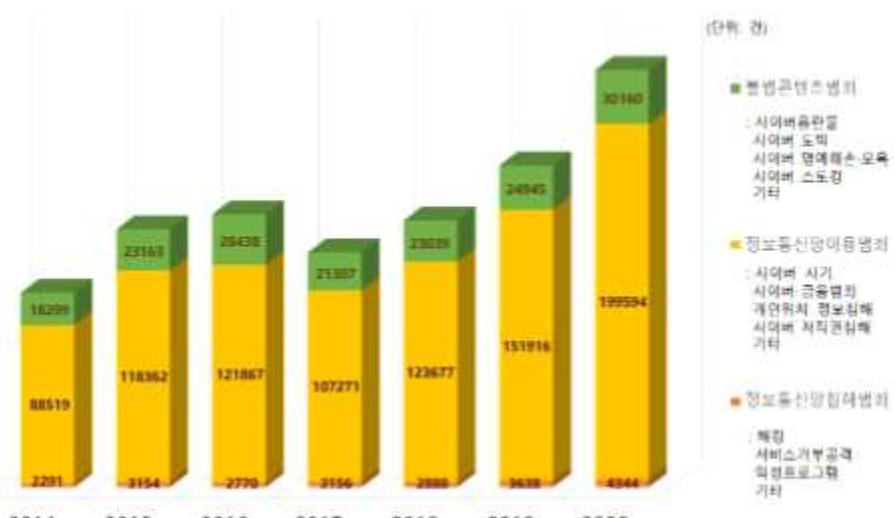


출처: 검찰청 소년범죄자 재범관련 통계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로 3범 이상 상습범 비율은 20% 정도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 온라인 범죄

### 최근 온라인 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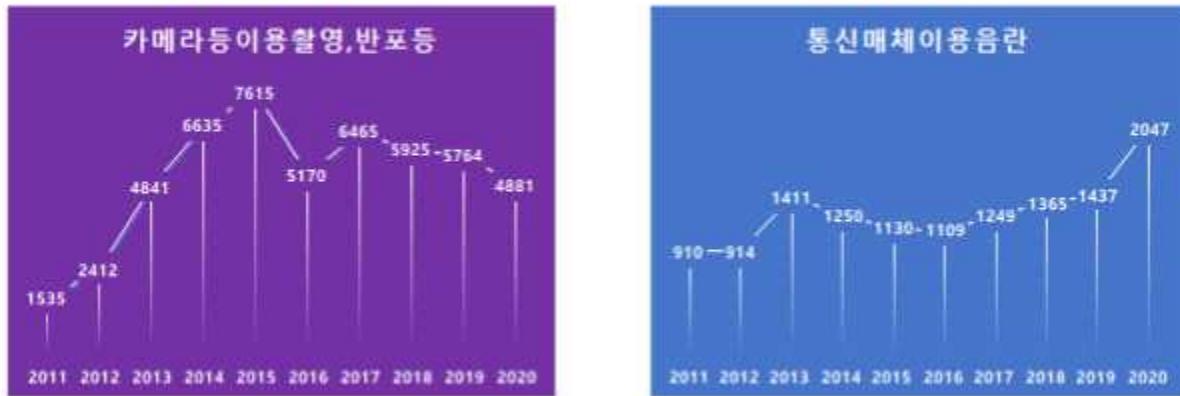
출처: 경찰통계자료 [사이버주사]

<최근 온라인 범죄 발생 추이> 통계를 보면 온라인 범죄 발생이 쉽도록 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법 콘텐츠 범죄가 3만 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텐츠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음란물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유인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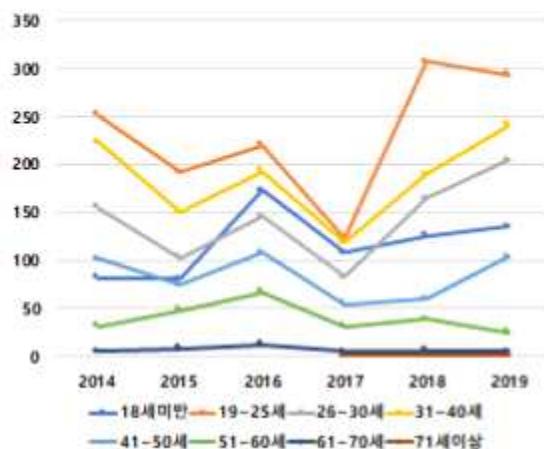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경찰 범죄-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통계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왼쪽 그래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죄>는 약간 추이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인 카메라만 제재해서는 온라인음란죄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범죄는 카메라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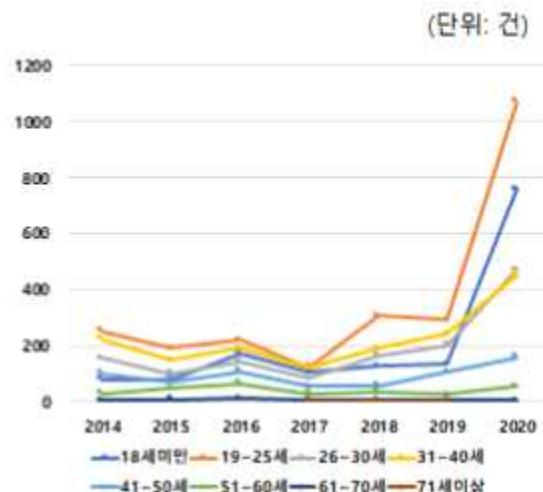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다크웹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안에서 여러가지 성적 유인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의 형태가 2020년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등)

2020년 명칭 변경



(단위: 건)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이제 온라인 범죄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음란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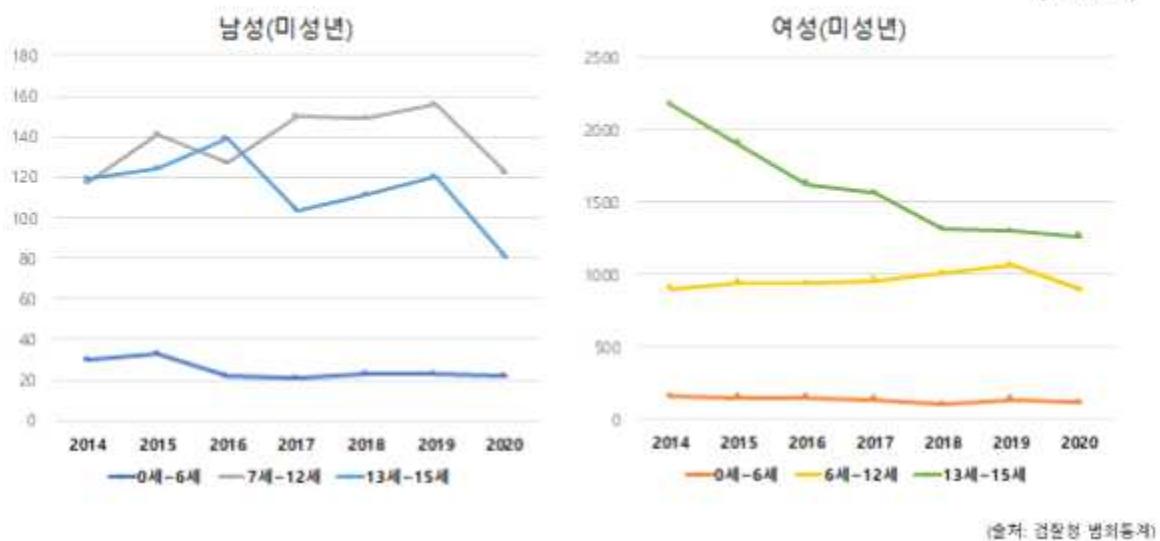
두 그래프 모두 오렌지색(19세에서 25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나이를 보시면 18세 미만입니다.

즉, 10대·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N번방 사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워낙에 10대·20대 가해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전과가 없는 초범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 5 미성년 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미성년) 발생 추이

(단위: 건)



다음 통계는 피해자 통계입니다.

많은 범죄 통계는 가해자 통계만 보면서 늘었다, 줄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피해를 입는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통계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만을 대상으로 피해자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어, 음란물 포함 전체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 성별에 따라 피해자 통계를 산출해봤습니다. 2020년 특이성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미성년) 발생 추이> 그래프 왼쪽은 남성 미성년자들의 피해 통계, 오른쪽은 여성 미성년자들의 피해 통계입니다. 남성 미성년자 피해자 통계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느 연령대가 지금 피해자로 제일 많이 편입되느냐 라는 것인데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1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노란 선이 계속 증가 추이인데이요. 이 노란 선은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12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자로의 편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5년 사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등학생들조차 남녀 가리지 않고 성범죄의 피해자로 많은 수가 편입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보호가 아동 학대에 못지않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을 하신다면 의제 강간 연령 이하의 아이들 또 그 중에서도 13살 미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 2 권력형 성범죄

우리 공직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유의해야 할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권리형 성범죄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력 : 자신의 지위 또는 권력 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힘
- 위계 :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행위 또는 그 계책 자체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저하되어 있는 대상을 상대로 많이 발생합니다. 위계나 위력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간음죄」 적용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위계·위력 성범죄는 권리형 성범죄라고도 불리는데, 이 권리형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 권리 과시형 :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 저지르는 성범죄
- 감정 호소형 : 권력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며 위로를 강요

## 1 위력 성범죄 판단기준

사회 저명인사들의 권리형 성범죄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력 성범죄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직장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조직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라고 하면서 그 대의 앞에서는 성범죄 같은 일은 작은 일이나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따라서 신체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및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성범죄에 결코 거절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것입니다.

## 2 발생 원인과 자기 비판의식 강화 요망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갖는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잣대를 갖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한이 커지면서 자기비판의 의식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본인 행동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불법 행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선거 운동을 장시간 하게 되면서 지지하는 그룹이 형성되고 외부 공격에 지지그룹이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공직 후보자 여러분들도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성인지 감수성

권력형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아랫사람들의 피해를 정확히 공감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인의 감수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 반응을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거울 뉴런, 예컨대 아이 컨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나에게 거울 뉴런을 통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의 고통이 거울 뉴런을 통해 나에게도 “아 이 사람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곧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권력자들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자율권을 침해받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그것을 내가 혹시 타인에게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감수성, 공감능력 나아가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예비 공직후보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습문제

1. 다음은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른 가정폭력 검거현황이다. 이를 본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 ① 희철 : 가정 폭력 범죄는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2016년 이후로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가정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되는군.
- ② 진미 : 맞아, 가정 내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놀랐어. 공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 ③ 상호 : 우리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서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어. 진영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 ④ 서정 : 그래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외부자가 참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2. 다음은 2021년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의 조항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

\* 시행 2021. 10. 21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민국 :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군.

② 철희 :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가 낳은 비극적 범죄들이 스토킹 처벌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화했지. 입법 당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었어.

③ 동숙 :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면 좀 쫓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해.

④ 채연 :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에 비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건 2021년 10월부터였네. 늦었지만 다행이야.

3. 다음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10대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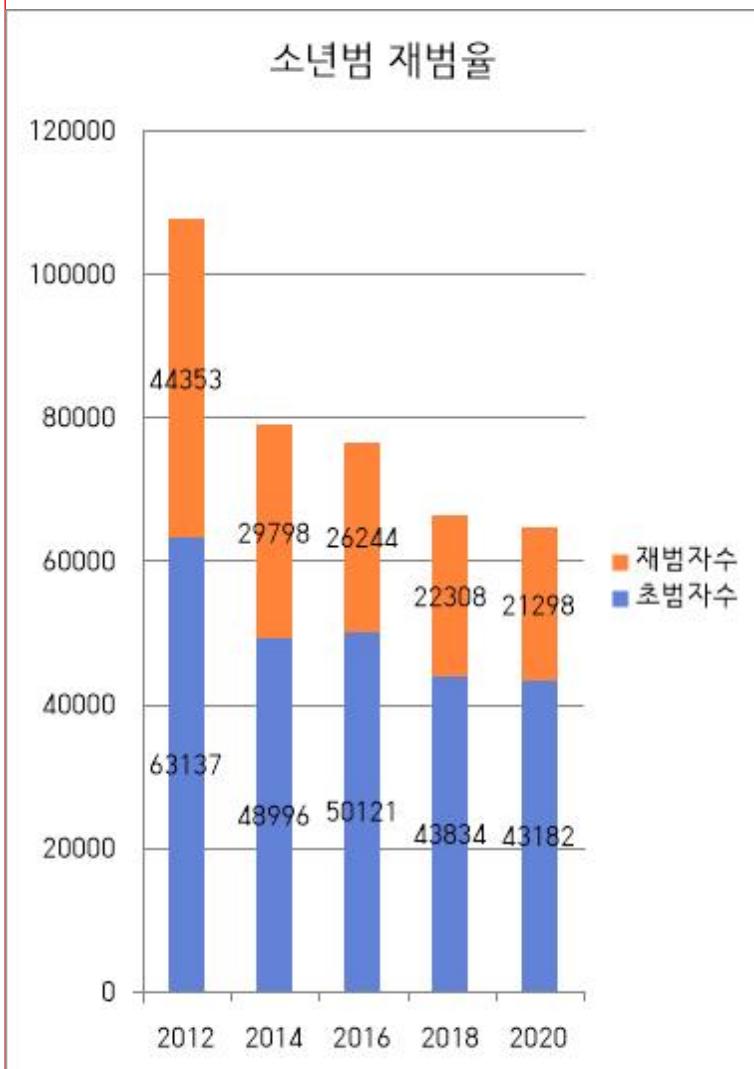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사·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 ① 진호 :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야.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 평가할만하겠군.
- ② 상철 : 10대 약속에서 언급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는 선언이야. 다소 억울함이 발생할지 모르나 모든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오직 피해자의 의견만을 들어야 하지.
- ③ 상국 :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국민의힘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지.
- ④ 지현 : 진영논리에 갇혀 ‘피해호소인’과 같은 촌극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한 다짐이야. 권력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중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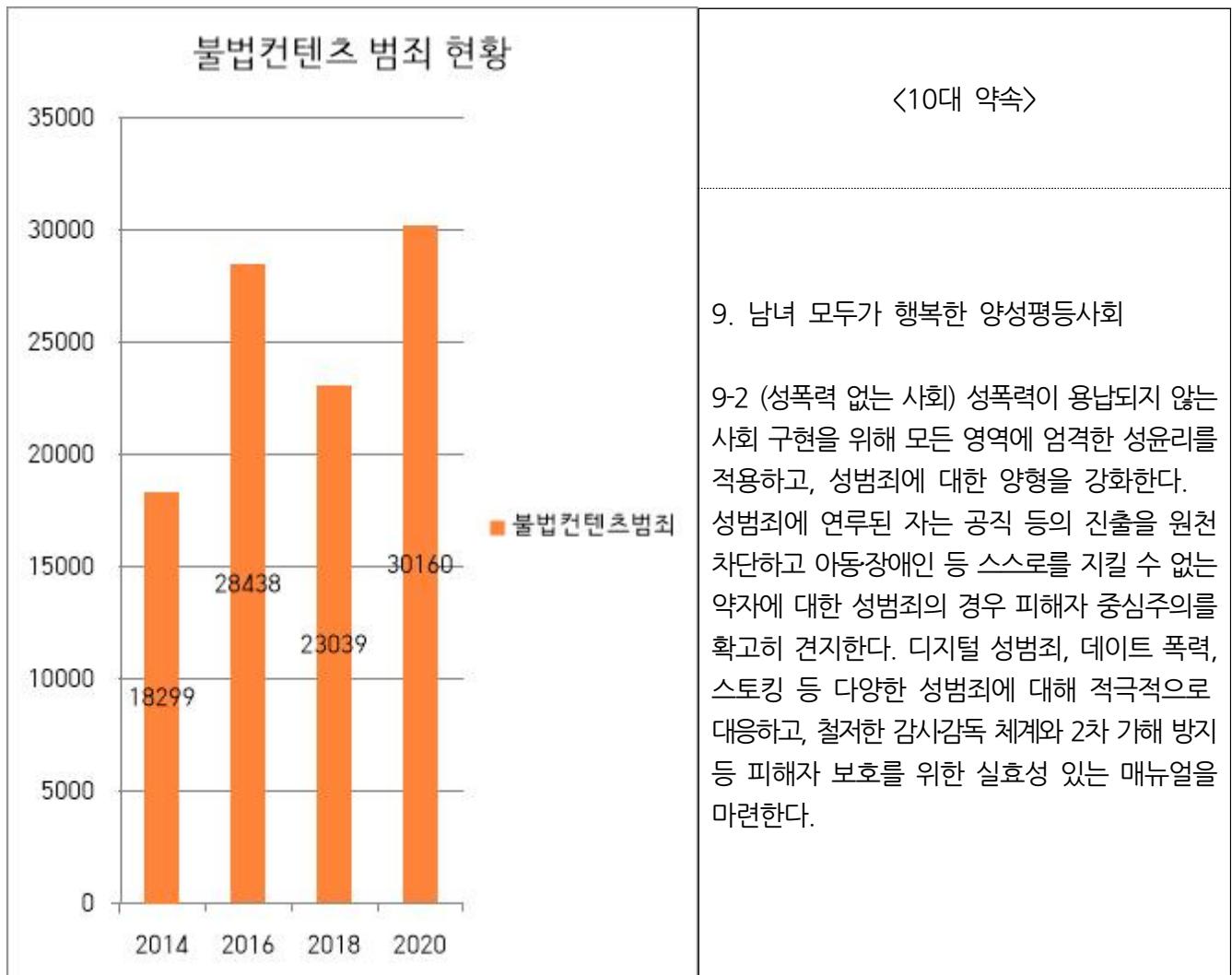
4. 다음은 <소년범 재범률>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10대 약속>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8-3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
저출생 사회의 해법은 개인과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노동시간의 유연화, 안정적 주거복지, 일과 개인 삶 사이의 균형,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녀는 양육자에 귀속된 소유물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임을 믿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보편적이고 질 높은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 ① 청아 : 2016년 이후로 소년범 재범율이 30%대에서 제자리 걸음이야. 소년범이라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재범율을 줄여야 해.
- ② 솔이 :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약속이야.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재범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어.
- ③ 찬이 : 소년 범죄의 전체 총량은 감소세야.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어.
- ④ 상호 : 초범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야. 아이들이 쉽게 범죄로 유인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

5. 다음은 <불법콘텐츠 범죄>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① 미주 :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약속이야. 성범죄의 영역이 디지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범죄에 잠입수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해.
- ② 호찬 :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불법콘텐츠 범죄가 증가세에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초당적인 지원이 중요하겠군.
- ③ 석준 :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2차 가해 방지 역시 중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 ④ 경미 : 이 땅에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소의 인권도 희생해야 해. 국가가 더 강력한 중앙통제, 선제 검열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원천 차단해야 해.

6. 다음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권력형 성범죄 예방 교육 중 일부이다. 강사의 언급 중 옳지 않은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 당원협의회 당원 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된 김ㅁㅁ입니다.

먼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권력 과시형'과 권력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며 위로를 강요하는 '감정 호소형'으로 나뉩니다.

이런 ②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간음죄」를 적용 받습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상사에게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한 권위적인 조직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 앞에서 성범죄 같은 건 작은 일이나 문제 삼지 말라고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③결국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성범죄에 결코 거절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된 펜스룰(Pence Rule)이 것입니다. ④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른 성별의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펜스룰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①    5. ④    6. ④

## 7.

### 지방자치



# 1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의 보기]

### 1 지방자치 의미와 효과

지방자치란, 구역을 단위로 주민들이 공동의 일이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 사무들은 **실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보충하는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고,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은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문제를 처리하고 국정의 관료화를 견제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고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분업을 통해 효율적 행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선호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 2 지방자치의 사무

지방자치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통일적 처리를 위한 사무에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기술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도 지방자치 사무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임·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 통일, 조정 필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 어려운 사무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유사무는 자기 부담으로 제공하는 주민서비스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해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예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와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 위 내용 1~7 아래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치사무 예시 약 60여개가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자치법 해당 조문을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원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인데 지자체에 위임한 일입니다.

주로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하며 예방접종이나 하천관리, 기초생활보장 등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유사하지만 지자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무의 이양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조례 대상인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그 사무의 범위가 늘 문제가 됩니다. 또 재정지원 없이 사무만 넘기는 등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 3 지방자치의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라는 입법권을 가집니다.

정부가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직접 발의해 조례를 만듭니다. 물론 이 조례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사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른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세와 분담금 등 재원을 걷고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는 권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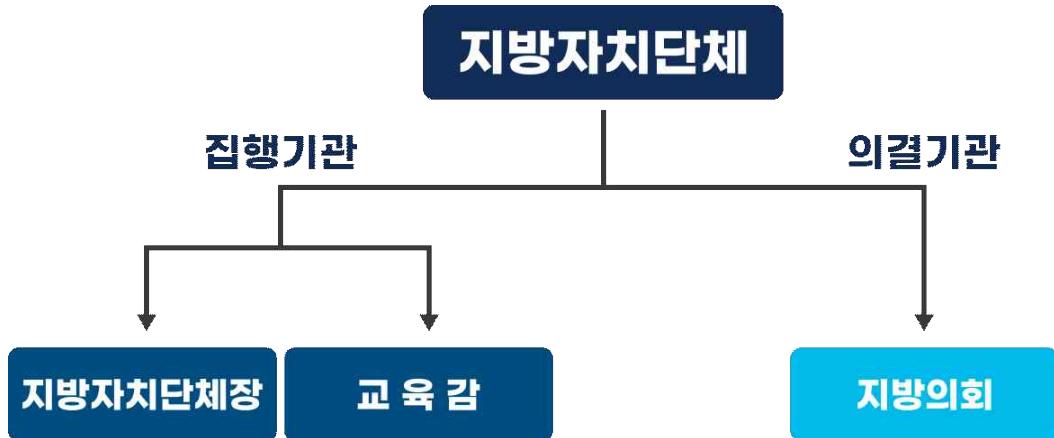
자치조직권은 행정기구나 인사 등 조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자치사무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넓은 개념으로 자치행정권이라 부릅니다.

###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고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모두 지방선거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각각 선출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정치 성향과 소속 정당이 서로 유사할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원래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서류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안과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위반 사항이면 집행기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재의요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제49조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122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권리

###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

- 의안 발의
- 재의 요구
- 선결처분권
- 임시회 소집요구권
- 예산안 및 결산 제출

### 지방의회 (의결기관)

- 조례 제정권
- 행정 사무감사, 조사권
- 서류제출 요구
- 출석·답변 요구
- 예산안 및 결산승인

## 5 지방재정과 예산

자치사무를 잘 수행하려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높고 매매가 많은 서울 부자동네와 지방 시·군의 자체수입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 즉 조건 없이 써도 되는 돈을 보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금으로 나눠주고, 또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에게 조정교부금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간 교육 발전의 균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 중앙 → 지방 : 지방교부세 (내국세 19.24%)
- 중앙 → 지방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 광역 → 기초 : 조정교부금

언론에서 흔히 ‘자체수입으로 인간비도 충당 못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재정자립도라는 용어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등 지역마다 취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지방세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자체수입에 지방교부금과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한 재정자주도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 100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 100

보조금은 조건이 걸려 내려오는 돈입니다. 주로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곳간 사정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매칭 비율이 정해집니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약 120개 사업과 기준비율이 적혀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보조율은 서울은 50%, 지방은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보조율 예시〉

- 일반여권 발급 : 100%
- 119 구조장비 확충 : 50%
-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 80%
- 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서울 50%, 지방 80%

## 6 주민 참여 제도

세계사를 볼 때 국가가 생성되기 전에는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바로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가 있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법에서 다릅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들이 연대 서명하여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특별자치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와 도, 시·군·구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 법률에 **특례조항**을 두어 조직, 운영에서의 특별자치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특별시 4곳**이 출범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급 위상 정도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례시는 별도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각종 세제나 규제를 완화해 기능적 특별자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2003년 영종도·송도·청라지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그해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이 지정됐습니다. 이후 2008년 경기, 대구·경북, 2013년 충북과 동해안권, 2020년 광주·울산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 2

## 지방자치의 핵심과제와 발전방향

### 1 자치사무의 확대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오랫동안 정착해온 교육자치와 최근 도입된 자치경찰일 것입니다.

교육자는 중앙권력이나 정치로부터 학교를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도시나 농촌, 섬 지역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현장이 더 잘 알아서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라는 배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는데, 치안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생활안전이나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교통사고, 성폭력사건 등 민생치안도 담당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치사무가 계속 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사무 중에서도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방마다 규제 완화권을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글로벌한 디지털 시대에 지자체 나이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자주재원의 확대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 지자체 예산이 풍족해야 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입니다. 중앙에서 80%를 걷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내려보냅니다. 지방재정이 중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에 잘 보여야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습니다. 연말 예산철, 국회에 쪽지 예산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가 점점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자체에 매칭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역균형 등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자자체가 자기재량으로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주재원을 넓혀야 지방분권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3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서울시에 소속된 공무원이 1만7천명입니다. 서울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은 110명이고, 서울교육청 공무원이 7천명인데, 시의회 교육위원은 13명입니다. 일단 인력이나 정보력에서 지방의회가 약합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 수의 50%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핵심 자료를 끝까지 받아내려면 그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시·도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헤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뼈 아픈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고 집행기관이 모르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할 때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 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 사람은?

예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를 처리할 수 있다.
민영: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회진: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윤규:	국가사무 중에서 예방접종이나 하천관리, 기초생활보장 등을 법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성민:	우편과 철도, 국토종합개발계획, 농수산물과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진호: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마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예찬, 성민, 진호    ② 민영, 회진    ③ 민영, 윤규    ④ 예찬, 윤규

2.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기관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사람은?

성용: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고,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다.
인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승: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경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단체장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태욱: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의회 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다.

- ① 성용    ② 인규    ③ 호승    ④ 경준    ⑤ 태욱

3.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 또는 지역살림이 잘 쓰이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련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용어와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지은 사람은?

- |           |           |               |
|-----------|-----------|---------------|
| (가) 지방교부세 | (나) 조정교부금 |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라) 재정자립도 | (마) 재정자주도 | (바) 보조금       |

진규: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동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조건없이 내려보내는 예산
성현:	지역 간 교육 발전의 균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나눠주는 예산
요한: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수현:	자치단체 자체수입의 불균등에 따른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내국세의 19.24%를 나눠주는 예산
진현: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건이 걸려 내려오는 예산

- |                      |                      |
|----------------------|----------------------|
| ① (가) - 진현, (마) - 요한 | ② (다) - 성현, (라) - 진규 |
| ③ (나) - 진현, (바) - 동현 | ④ (가) - 수현, (마) - 진규 |

4.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종형: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민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일연: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혜원	주민은 단체장에게 조례안의 제정,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① 종형 | ② 민형 | ③ 일연 | ④ 혜원 |
|------|------|------|------|

5.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와 도, 시·군·구가 있는데, 이와 별개로 특별자치를 인정하는 지역들이 있다. 특별자치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소희:	외국기업에게 각종 세제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에만 있다.
철환: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동욱: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이다.

- ① 소희      ② 철환      ③ 현주      ④ 동욱

6. 지방자치의 효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지은 것은?

창훈: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지역주민과 대표자들이 함께 공동문제를 처리하고 국정의 관료화를 견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경석:	지방자치는 행정적으로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분업을 통해 효율적 행정을 가능하게 했다.
동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0:20에서 향후 60:40으로 바꾸면 지역균형 발전도 달성할 수 있다.
우성: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정책지원을 하는 보좌인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인정되고 있지 않다.
승욱:	앞으로 주민 실생활 밀착형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은 그런 취지의 일환이다.

- ① 경석, 동수      ② 창훈, 경석, 승욱      ③ 동수, 우성      ④ 창훈, 승욱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④    5. ①    6. ②

## 8.

### 청년정책



[강의 보기]

# 1

## 국민의힘 당헌·당규 속 ‘청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정책 <10대 약속>

####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 1-2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든다.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및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문제를 완전히 청산한다.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고액 체납과 탈세 등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 1-3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 지나친 사교육 확대로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운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가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교육이 사회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선발 제도를 확대한다.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식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 보조 교사를 공교육에 적용하여 개인 간 학습격차를 해소한다.

국민의힘은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내로남불’과 ‘불공정’, ‘부정의’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사태’, ‘인국공사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개인의 노력을 폄하했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부모찬스로 공정한 운동장을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자나 기득권이 아니어도 ‘부모 찬스’ 없이도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한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습니다.

# 2

## 현행법령에서의 청년과 청년 정치참여

### 1 청년의 구분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국민의힘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

제10절 청년위원회 ②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에 따른 구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에서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이라는 규정을 준용해 청년을 만 45세 미만으로 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2 청년 정치참여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청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에게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에 따라서 만 16세 이상은 정당가입이 가능합니다.

### 〈헌법〉

제67조(정의)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출마가능 연령은 만 4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 국민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국민의힘 주요 청년정책

## 1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 ▶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 분야가 4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20%에 해당하는 9천만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80%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원은 장기 원리금 상환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

###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 신설
-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 3 주요 청년정책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불법찬스 없이도 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 ▶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청년 민심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2030 청년 민심 분석 및 대응 방안>

○ 현황

-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2030세대가 2022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큰 지지를 보냄.  
\* 20대 이하(45.5%), 30대(48.1%)

출처 : 2022 대선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 분석

-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강행 등,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에 등을 돌림.
- 조국 사태 등 사회지도층의 내로남불과 공정 가치 훼손에 실망해 대안으로서 야권을 지지함.
-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치의 폭등이 이루어지자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불가능해진 박탈감에 따른 반사작용이 작용함.

① 하영 : 2030세대가 불과 5년 만에 지지 정당을 바꾸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서야 해.

② 은정 : 맞아, 그리고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기득권 대물림이 없어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

③ 경준 :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큰 박탈감을 느꼈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문제야.

④ 장원 :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2030세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봐야 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야.

2.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이끌었던 새라 머레이 감독의 발언과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난 4년을 준비했다. 개막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

“스태프 중 한 명을 통해 불과 이를 전에야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단일팀 논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 〈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에 대한 찬반 〉

(%)

	찬성	반대	잘모름
전체	40.9	<b>46.3</b>	12.9
20대	29.8	<b>54.9</b>	15.4
30대	40.5	<b>51.3</b>	8.2
40대	<b>56.5</b>	34.2	9.2
50대	38.3	<b>48.8</b>	12.9
60대 이상	37.9	<b>44.7</b>	17.4

※ 알앤써치 바로미터 여론조사(18. 1. 24)

- ① 승호 :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청년의 찬성 여론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이 문제를 공정 이슈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 ② 준우 :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다니 20대는 이때부터 반정부성향이 짙었구나.
- ③ 인규 : 공정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2030의 여론이 표출된 사례로 봐야겠군.
- ④ 연주 : 우리도 청년 유권자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앞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어.

3. 다음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읽은 사람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중략)
-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중략)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① 재형(만19세) :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당장 출마할 수 없어”

② 은희(만19세) :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어”

③ 우택(만17세) : “오늘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④ 학용(만17세) :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거야”

4.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발췌내용과 ‘내 집 마련’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했을 때, 옳지 않은 주장은?

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2022.3.10. *한국일보*, 신연수 기자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잔금을 갚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을 통해선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 빗물펌프, 공영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중략)

질문) 선생님께서는 향후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택 구입해야”	“주택 구입 필요없다”	기타	잘모름
전체	60.5%	27.7%	9.0%	2.8%

[데이터리서치 정기 국민여론조사(22. 1. 25)]

- ① 범수 : ‘청년원가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겠어.
- ② 형동 : ‘청년원가주택’은 공공임대라서 ‘내 집 마련’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야.
- ③ 대식 : ‘역세권 첫집 주택’은 청년들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 ④ 경준 : ‘역세권 첫집 주택’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을 것 같아.

5. 아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다. 다음 중 국민의힘 청년정책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 나.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
- 다.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최대 5점
- 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6. 다음 보도자료를 본 당원들의 토론 중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1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층도 2021년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들어 더 심해진 고용 한파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 ① 성원 :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해.
- ② 의동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 ③ 석준 : 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거야.
- ④ 춘식 :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야.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서 취업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④    6. ③